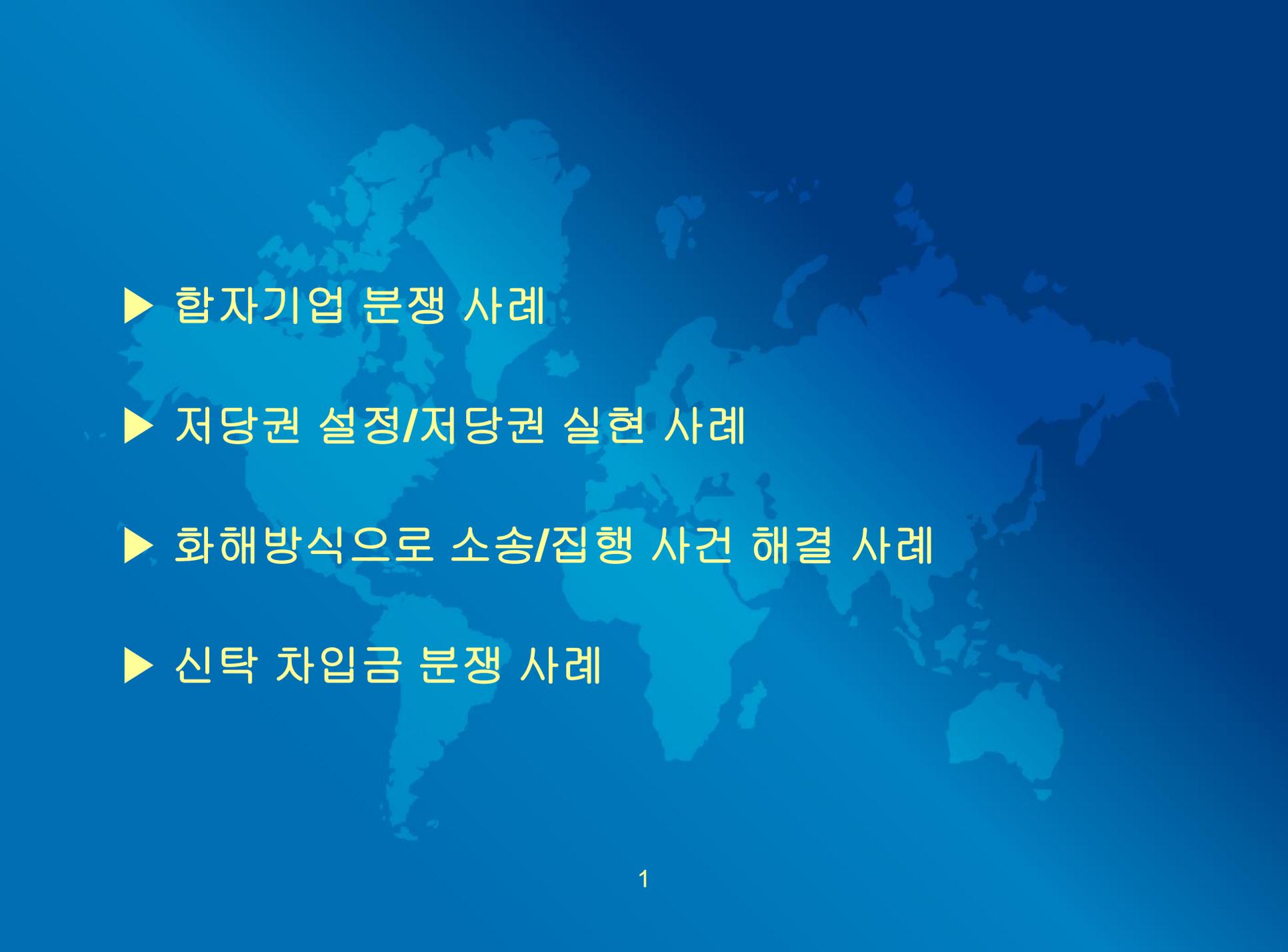


A faint, light blue world map is centered in the background of the slide, showing the outlines of continents and oceans.

재중 한국기업 상사분쟁 해결사례와 시사점

금평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연숙

2015년 10월 22일

- 
- A faint, light blue world map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of the slide, centered behind the text.
- ▶ 합자기업 분쟁 사례
 - ▶ 저당권 설정/저당권 실현 사례
 - ▶ 화해방식으로 소송/집행 사건 해결 사례
 - ▶ 신탁 차입금 분쟁 사례

▶ 합자기업 분쟁 사례

1. 1995년, 한국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중국측에서 공장 부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측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설비를 제공(중고)하는 조건으로 북경시 근교에 중한합자기업을 설립.
2. 그 당시 중국은 외자투자를 장려하여 현정부에서 협조서까지 제시해 주고 또한 북경시 시장李其炎이 한국방문기간 계약식에 출석.
3. 분쟁발생 원인
 - 1) 한국측에서 전부 설비 제공후 中關村 프로젝트가 해당 합자기업 소재지에 정착되기 때문에 공장은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여 한국측에서 불만.

2) 중국측에서 한국측이 제공한 중고생산라인 설비의 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관련 기관에 고발.

4. 변호사의 분쟁 해결 조치

- 계약서, 정관 검토 및 법률의견 제출.
- 중국측과 접촉하여 상대방의 의사 파악.
- 관련부서와 접촉하여 한국측이 고발된 사건을 조정.
- 해당현 현장을 통하여 향정부, 중국측 모회사와 해결방안 검토.

5. 결과

한국측은 중국측이 제기한 양보 조건도 마다하여 협상은 최종 파결.

본 분쟁건에 대해 더는 협조 못하기에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현장의 정부를 대표한 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국측이 원래 주장을 포기하고 중국측과 다시 협상하기로 제안하였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상황이 변했음.
계약서에 의거할때 한국측은 중재를 해도 승소 희망이 없었기에 중재 신청을 포기.

해당 회사의 회장은 고병에 걸렸고 몇 년 후, 그 가족에서 손실을 만회코자 북경에 왔었지만 설비는 이미 중국측에서 저렴하게 전부 처리한 상태.

6. 문제점

1. 중국 진출시 정부나 영도, 인맥관계만 중시.
2. 계약서, 정관에 자신의 권익보장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3. 변호사의 건의를 중시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놓침.

A faint, light blue world map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of the slide, centered behind the text.

7. 시사점

- 영도가 아니고 법률에 의거해야 권익 보호의 보장 있음.
- 법률의견을 중시하고 문제 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함.

▶ 저당권 설정/저당권 실현 사례

▶ 토지저당권 설정

1. 기본상황

1996년, 한국 한 대그룹(이하 한국측이라 약칭)은 북경시 골든지역의 프로젝트의 전반 시공 도급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중국측에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대출을 조달하기로 약정하고 법적보장을 위하여 미국 대형로펌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여 고액의 용역비로 시공대출 협의서, 시공협의서, 外国买房购买建筑物单位之协议, 저당대출 협의서 등 용자 총금액이 미화 2억여만원이 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

2. 계약서 이행 난제 봉착

1) 한국측은 계약서에 따라 제1기 미화 3,500만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 시공팀 및 관리자들을 파견. 단 중국측이 토지 사용권저당 신청과정에서 장애 봉착. 그 원인은:

① 그 당시 중국에서 금융기구만 토지사용권에 대해 담보설정 가능.

② 금융기구가 아니면 국내와 외국 상관없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 실무상에서도 선례가 없음.

2) 중국측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저당권 설정 못했음. 중국측에서도 각 종 인맥관계 동원하는 동시에 부동산업무 전문 로펌과 정부 고위층 배경있는 로펌에도 자문 의뢰하는 등 많은 방법을 강구하여 보았지만 법률과 정책에 따라 금융기구가 아니면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 못함이 부동산관리국의 국장 사무회의 답복 포함한 동일한 자문 의견이었음.

그리하여 중국측은 한국측에게 중국 정부규정과 정책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당권 설정은 유감스럽지만 절대로 방법 없기에 다른 해결안을 찾아 보자고 알림.

3. 禁止令을 돌파한 첫 사례

1) 변호사 선임

중국측에서 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국측은 한국기업 중국 진출의 법률창구인 금평로펌에 구급 요청 함.

금평에서는 우선 5명의 변호사로 특별전문팀을 구성하여 한중 양측이 이미 체결한 계약서 등 일련의 법률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 특히는 담보관련 규정, 금융관리 규정 및 정책의 입법입규 정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97)국토(적)자2호 문건을 돌파구로 탐색하여 1997년 5월 30일, “죽은 말을 산 말처럼 치료”하는 이미에서 수임.

2) 종합조치로 난제를 돌파

① 국장사무회의의 특별 검토 쟁취

비교적 성숙된 법률의견으로 부동산관리국의 권속등기처 등 4개 부서 및 영도들과 교류 하여 국장사무회의의 재차 특별검토 신청.

응당 중국측이 제출해야 하는 특별신청보고서까지 금평에서 작성하여 각부서가 공동 히 국장사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교구의 회의장소까지 국장助理를 찾아가는 등 옷갓 노력 다하여 끝내 북경시부동산관리국 국장사무회의에서 一事一议의 원칙으로 한국기업이 해당 토지사용권에 저당권 설정및 등기를 특별 허가하기로 결정.

1998년, 이사안으로 하여 북경시에서 중국경외의 비금융기구는 토지 사용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식으로 입법.

② 저당등기를 위한 전반 법률문서 작성 및 수정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등기를 해야 하기에 전부 서류를 다시 작성 혹은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중국민법통칙 제144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저당의 적용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선택권이 없으며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해야 함. 단 원저당계약은 영국법을 적용법률로 규정하였음

원 저당계약서 내용이 한국측에 유리하지만 중국 담보법의 저당 계약 및 저당물등기 등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비준 불가능.

외국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의 표현 방법이 중국과 부동하여 관원들의 심사시간이 많이 필요함 .

③ 한 프로젝트 토지를 분할하여 저당권 설정.

중국측은 기타 상업목적으로 프로젝트 토지를 1, 2기로 나누어 2기의 토지 사용권만 저당하기로 주장하여 다시 한번 특별신청 절차를 밟았음. 그 이유는:

A. 국내 금융기구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한 프로젝트 토지를 분할하여 저당할 수 없음.

B. 실무상에서도 선례가 없음.

또 다시 금평에서 북경시房地产관리국과 협상하여 一事一议의 원칙으로 본건 프로젝트 토지를 2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그 중 제 2기만 한국측에서 저당권을 설정 및 등기함에 동의 취득.

④ 성공적으로 저당등기 완료

1997년 8월 8일, 금평의 김연숙 변호사와 강문변호사는 각각 한국측과 중국측을 대리하고 중국측 변호사는 단지 열석하여 등기 과정만 견증하는 조건으로 북 경시 방산관리국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제 2기, 토지면적이 11,405㎡이고 저당가치가 미화 147,979,258원(미화 일억사천칠백구십칠만구천이백오십팔원)인 토지 사용권에 저당권 설정 및 등기 수속 취급.

·
상기 저당권 등기 수속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한국측의 미화 3,500만원의 채권에 확실한 법률보장을 설치.

4. 시사점

- 투자전에 확실한 실사 및 현지 법률검토 필요
- 유효한 적용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법정신을 충분히 이해 및 운용하여 자체 권익 보호

▶ 저당권 설정/저당권 실현 사례

▶ 저당권 실현 사례

1. 분쟁 발생 원인

중국측에서 제2기 대출 위한 외환등기를 못하여 한국측에서 대출을 제공 불가능하여 중국측은 제2기 대출 미 제공이유로 한국측에 시공비를 지급 하지 않아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 IMF 발생하여 한국측은 **1998년초 현장 철수.**

21세기초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적극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해당 토지가 골든지역으로 변신된 시점에 한국측은 중국측의 위약통지 접수. 해당 프로젝트의 원홍콩측 과 북경측 주주의 분쟁에 상무부와 북경시 정부가 각각 일방을 지지하는 전국을 들썩이는 상사대전이 발생 함.

2. 법에 따른 분쟁대응

1) 법률자문 및 결책

금평은 계속 프로젝트 고문사로 역할하면서 저당권 실현의 소송을 제기하기를 건의하여 한국측은 1년 이상 검토 거쳐 소송절차를 밟기로 결정.

2) 로펌 선정

금평은 저당권 설정부터 줄곧 자문하여 왔기에 파악이 있어서 우선 금평과 위탁의향서 체결하였었는데 기타로펌은 파악은 부족하지만 규모가 크고 수임료가 많이 저렴하기에 최종 그 로펌에 의뢰.

단, 그 로펌에서 법원에 제출한 지불령이 기각 당하여 한국측은 그 로펌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시 금평에 구급 요청하여 성공보수 조건으로 代理계약을 체결.

3. 원만히 채권(저당권) 실현

1)사건 입안 :

금평은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 저당권 실현의 사유로 소송 목적액이 6.8억위안(본금 및 이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우선 사건 입안(접수)이 아주 어려웠음. 그 원인은

- 주계약서-시공대출협의서에 의거하면 쟁의해결은 영국런던에서 영국법에 따라 중재해야 함.
- 고급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상무부와 북경시정부의 싸움에 회피하려고 결정.
- 프로젝트 새로운 인수측의 배경으로 재중소송의 저촉 심함.

상기 원인으로 하여 난도가 아주 컷지만 금평은 각 종 가능한 방법과 조치를 유효하게 취하여 끝내 원래 불가능한 사건을 중국법원에 접수.

2) 소송과정에서의 대응 및 책량:

A. 관할권 이의에 유력히 대응.

상대방은 우선 주계약에 근거하여 쟁의는 국제상회 중재원에서 중재하여 해결해야 하고 중재지는 영국 런던이기에 중국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출하였고 금평은 이치에 입각하여 중국에서 체결한 해당계약은 중국에서 이행해야 하며 중국법률이 적용법률이고 쟁의 해결은 중국 법원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강력히 논쟁하였다. 동시에 휴정기간 상대방의 총재와 주동적으로 해결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소통.

B. 북경시정부 와 상무국, 중국측(북경과 홍콩)등 여러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여 해결 방안 탐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협조 취득.

C. 프로젝트 청산팀의 채권 등기 통보를 받은 후 청산팀팀장 및 변호사와 면담하여 한국측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여 한국측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

3) 화해협의를 체결:

한국측은 일시불로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자청구를 포기하고 중국측이 일시불로 대출본금을 한국측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금평은 중국측의 외환상환, 저당권 해지 등 관련 수속 진행에 협조하는 동시에 고급법원의 소송을 철회.

4) 화해협의를 완전히 이행:

- 중국측은 화해 협의서에 따라 일시불로 한국측이 지정하는 한국 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금평의 변호사는 한국측을 대리하여 저당해지 수속을 밟는 동시에 북경시고급법원에 소송 철회 신청서 제출하여 소송 철회의 허락재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

4. 본 사건의 난의점

- 1) 주 계약과 유효한 종계약인 저당계약의 적용법과 분쟁해결 기구 즉 관할지가 부동.
- 2) 격전의 쌍방 이 모두 상당한 배경으로 인한 분쟁 미해결로 실제 적격의 상대방 확정 못함.
- 3) 王岐山 시장이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며 법원에서 접수 거부.
- 4) 사회 각 방면의 특별 주시로 로펌이 자신 보호 필요.
- 5) 사건 해결의 전반 사료, 방안, 협력의 비밀 보수 필요.

5. 시사점

- 중대한 프로젝트 투자 진행시 우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유효한 계약서 체결.
-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여 자신의 권익보호 혹은 피해 감소의 최적화 실현.

▶ 화해방식으로 소송/집행 사건 해결

1996년, 한국 xx그룹의 몇 개 자회사(이하 한국측이라 칭함)는 북경의 두개 국유기업 포함한 북경과 홍콩 의 4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 회사의 대부분 지분을 양수하여 합자회사를 재 구성.

프로젝트의 투자를 위하여 한국측에서는 북경소재의 대형 로펌과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사한 기초상에서 일련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으며 중국측으로부터 “대외적으로 대출 또한 보증 등이 없어 양도전 행위로 인해 손실을 볼 우려가 없으며 아니면 일체법률 후과를 부담함” 이란 보증까지 받음. 단 禍不单行이라고 합자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여 意外에 연이어 10여개나 되는 소송, 집행사건이 발생함. 예컨대,

1. 中保회사에서 담보책임건 집행

1995년, 중국측 A회사(이하 는 A회사 가 약칭)는 中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합자회사는 <대출보증서>를 제공하여 A회사가 기한 만료되어 1500만위안의 대출을 상환 못하자 中保회사는 A회사와 합자회사를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일심법원은 A회사는 대출과 이자(一万分之六) 를 상환하고 합자회사는 배상책임을 지기로 판결.

합자회사는 고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상소를 포기하였고 A회사는 상소를 제기하였지만 상소결과 원 판결이 유지되어서 1999년, 합자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협조 집행령을 접수.

2. XX은행 지분 집행권

A회사는 1993년에 금융시장으로부터 XX은행의 2,000만위안의 단기간 대출을 받아 1994년에 기소 당하였고 1995년 12월에 상소판결의 효력 발생.

2002년 2월, XX은행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A회사 소유의 합자회사 10% 지분으로 XX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민사재정을 내려 XX은행이 합자회사의 주주로 되었음. 단 A회사가 지분양도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여 한국측은 이때에야 해당 상황을 알게 됨.

3. 중국측 B회사 채무로 인한 분쟁

1999년, 한 중국내자 회사는 B회사(이하는 B회사라 약칭)가 소유하는 합자회사의 10% 지분에 대해 소송保全하는 동시에 합자회사를 해당 분쟁건의 제2 피고로 나열한 상황에서 B회사가 그 채무를 승인하며 소극적으로 응소하는 태도를 보아 한국측은 위기감을 느끼고 원 고문로폼에 의뢰하지 않고 당시 법원장 아들이 소속하는 로폼에 의뢰함.

4. 세건의 사건을 동시에 화해로 해결

1999년 여름, 합자회사는 새로이 금평을 법률고문사로 초빙하며 이왕 사건은 금평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새로 위임한 로폼 역시 효율적인 대책이 없어 한국측이 여차 간곡한 부탁하여 2000년초 금평에서 전부 사건 수임.

북경시고급법원에 中保회사 담보책임건의 재심신청을 제기하고, B회사의 채무 분쟁건은 관할의의를 제기하여 북경시고급인민 법원에 상소하는 동시에 XX은행이 A회사회사를 대체하여 합자회사의 10%지분 소유함의 법률근거 및 실무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세건의 난제를 하기와 같이 동시에 해결.

1) 금평의 변호사는 XX 은행과 몇 차례의 담판을 거쳐 2001년 4월, 한국측 주주로 하여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즉 1,200만위안으로 XX은행의 10% 지분(3160만위안 채권)을 양도 받기로 하였음.

2) B회사의 채무 분쟁건은 관할권 의이가 각각당하여 고급법원에 상소한 불리한 절차과정에서 전례없이 B회사와 원고를 설복하여 화해로 즉, 한국측 주주가 B회사의 10% 지분을 양도 받아 B회사가 양도금의 5.5%로 中保회사에 중국측 배상책임을 지고, 4.5%양도금으로 본건 채무를 상환하여 원고의 철회로 사건이 종료.

3) 위사건처리에 따라 中保회사는 <판결서>에 따른 합자회사에 대한 배상책임권리를 자동 포기하고 합자회사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재심신청을 철회하기로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2001년 8월 16일 B회사의 5.5%의 지분양도금액이 中保회사에 송금된 시점에서 판결서에 따른 합자회사의 배상책임이 면제되어 이튿날 법원에서 房屋管理局에 빌딩 解封의 집행 협조통지서를 송달.

5. 시사점

- 소송과정에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함.
- 자신이 불리한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화해로 해결함이 상책.
- 의난사건은 법률만 아니고 다방면의 실력으로 종합조치를 취하여야 돌파 가능함.

▶ 신탁 차입금 분쟁 사례

2001년 5월 하순, 상기 합자회사는 갑자기 북경시고급법원으로부터 민사소장을 접수하였는바, 원고는 북경시정부에서 구성한 북경시 신탁회사 청산팀이며 청구금액이 인민폐 일억일천여만원이었음.

주요사실:

합자회사의 A회사(이하는 A회사라 약칭)는 1995년 9월에 합자회사 명의로 신탁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차입금은 합자회사로 입금하지 않았음. A회사는 사실을 지분양도 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1. 금평의 변호사는 응소 과정에서 하기 문제점 발견:

- 1)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자금 왕래가 없었고 차입금은 A회사 동사장이 통제하는 기타 회사의 구좌에 입금.
- 2) 원고에게 제공된 영수증은 A회사에서 발급한 것임.
- 3) 차입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은 공상국에 비안된것이 아니고 합자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님.
- 4) 차입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은 위조 변조한 흔적이 존재함.
- 5) 법정대표인의 사인이 가짜인 가능성이 있음.

2. 유효조치

- 1) 법원에 회사 인감의 진위에 대한 감정 신청.
- 2) 원합자회사 동사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조사.
- 3) B회사를 통하여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
- 4) 공안 기관에 A회사동사장이 사기죄가 성립됨을 고발.
- 5) 유력한 대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판결 결과

인감은 감정결과 개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이고 동사장의 사인도 타인이 한 것이며 합자회사는 차입금 상환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합자회사는 일심으로 완전히 승소하여 한국측은 일억여위안 인민폐의 손실을 피면.

4. 시사점

- 소송이 발생할 경우 첫째로 로펌과 담당변호사를 정확히 선정해야 함.
- 의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률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돌파 혹은 대응.
- 사실 조사를 잘하여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력하게 논쟁해야 함.

(본건과 동일한 인감과 법정대표인 사인으로 상기 담보사건에서는 담보책임으로 판정 받았음)

-



감사합니다!